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106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106호(2022.2.9.)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감면 규정 신설에 따른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재산세 감면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조례 정비
 - 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범위 확대
 - 법 제183조제2항 지방세 감면 결정 및 통지 문구 삭제 반영
 - 영 제123조 직접사용의 범위를 주택까지 포함하여 적용 반영

2. 주요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의료 기관의 가설건 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4조의2)
- 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10조)
- 직접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변경(안 제11조)
-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 및 ‘그 결과 통지’ 문구 변경(안 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02-3396-5105, FAX: 02-3396-8699, E-mail: chaewo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50원” 을 “800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 을 “1,600원” 으로 한다.

제11조 중 “건축물” 을 “건축물 및 주택”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 을 “구세 감면 관련 사항” 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를 “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 로 한다.

별지 서식 전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접사용의 의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면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4조의2(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150원</u></p> <p>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500원</u></p> <p>② (생 략)</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 -----.</p> <p>1. ----- ----- ----- <u>800원</u></p> <p>2. ----- ----- ----- <u>1,600원</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u>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u>를 포함한다.</p>	<p>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 ----- ----- ----- <u>건축물 및 주택</u> ----- -----.</p>
<p>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u>감면여부를 조사 · 결정 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구세 감면 관련 사항</u>----- ----- -----<u>구세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u>-----.</p>